

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3303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민선9기 시정 로드맵 수립,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정책 자문 위원회가 필요함에 따라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, 권역별 시민대표, 공무원의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남시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및 기능
- 나. 회의 개최 및 의견 청취
- 다. 수당 등 비용지원

3. 제정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6. 24.~2026. 7. 14.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해당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기획담당관

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의 미래전략,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미래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미래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, 정책 자문, 제안,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한다.

1. 시의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주요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지역 현안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
3. 주요 갈등 현안의 공론화 및 시민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시장

2.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된 사람 2명 이내

③ 부위원장은 2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민간전문가,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들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에 따른다.

제6조(공동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

2.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

3.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되,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안건의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의견의 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, 기관·단체의 임직원, 그 밖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(이하 “분과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특별보좌관) ① 시장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별로 1명 이내의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.

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
2. 미래전략·기획, 도시개발·교통, 투자유치·일자리, 교육·복지, 문화·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특별보좌관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
제11조(자문단)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2.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
3.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2조(정책점검단) ① 시장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정책점검단(이하 “점검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 및 권역별 부단장, 총괄 간사를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단장 및 단원은 시민 또는 시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단장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

⑤ 점검단은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정책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3조(비밀누설 및 권한남용의 금지) 제3조에 따른 위원, 제10조에 따른 특별보좌관,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, 제12조에 따른 점검단의 구성원(이하 “위원 등”이라 한다)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위원 등의 해촉)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등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위원 등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질병, 심신장애,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
3.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·도용하거나,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4.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, 공공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5. 그 밖에 제13조를 위반하는 등 위원 등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5조(수당 등)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, 여비, 연구·조사 소요 실비(實費), 자문 수수료 등을 각 항목별로 최대 3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단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서명		기획조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기획조정과장 채 상 호
	팀장 직위 · 성명	기획팀장 장 보 배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박 새 봄 (031-790-5090)

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(수당 등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미래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 회의 참석수당, 여비 등
- 정책점검단 단원 대상 회의 참석수당
- 미래발전위원회 및 정책점검단 워크숍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장 채상호

